

2023년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

Policy Research Report

2024. 1.25. (목) 14:00~18:00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2층 대강당

부산 영도구 해양로 435-1

2023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

○ 일시 | 2024년 1월 25일, 14:00~18:00

○ 장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2층 대강당(부산 영도구 해양로 435-1)

전체사회: 김영중 기획조정실장

시 간	내 용
14:00~14:15 (15분)	개회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최석윤 총장 직무대리
14:15~14:25 (10분)	축사 제14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14:25~14:35 (10분)	• 법무정책분야 소개 및 진행 박형민 법무정책연구본부장
세션 1 공정경제	
14:35~15:55 (80분)	발표 1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1) 조준택
	발표 2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조성현
	발표 3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이경미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성빈 교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인유 교수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안 교수
	휴식
15:55~16:15 (20분)	
세션 2 공존과 포용	
16:15~17:55 (100분)	발표 1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1) 김명수
	발표 2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최혜선
	발표 3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강태경
	발표 4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박형민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성호 교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김현귀 교수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강우예 교수
	폐회
17:55~18:00 (5분)	

세션 1 **공정경제**

발표 1 •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I) | 조준택 7

발표 2 •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조성현 12

발표 3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이경미 18

세션 2 **공존과 포용**

발표 1 •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 | 김명수 29

발표 2 •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 최혜선 37

발표 3 •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 강태경 42

발표 4 •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 박형민 45

세션 1 공정경제

발표 1 •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1) | 조준택

발표 2 •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조성현

발표 3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이경미

발표 1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메커니즘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방안(I)

- 연구책임자 : 윤해성 선임연구위원(법학 박사, sung9987@kicj.re.kr)
- 공동연구자 : 조준택 부연구위원, 박성민 경상대학교 교수, 최진호 고려대 박사, 장석영 인천대학교 부교수, 이유경 고려대 박사, 김두원 중앙대 박사, 황태정 경기대 교수
- 연구 지원 : 황정미 조사연구원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계와 문화계에서는 메타버스를 활로로 한 다양한 소통공간을 마련하였고 새로운 콘텐츠가 발달되면서 전 세계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메타버스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물론 삶을 병행 하기에 이르렀음
- AI와 VR 등의 새로운 매체와 연결되면서 급기야 메타버스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고, 산업계는 물론 문화계에서는 앞 다투어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키워드로 언급되었음
-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고 새로운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 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형사 정책적 분야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형사법적인 영역에서의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비록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재산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의 범죄가 발생한다면 가만히 묵고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임. 이러한 관점에서 메타 버스가 무엇인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형사정책적 내지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메타 버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메타버스의 이해를 통한 대응방안 연구

-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문제가 될 만하다고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에 해당하는 법령들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문헌적 해석과 판례 분석,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비교법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적 제언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연구진이 직접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관련 전문가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또한 메타버스 관련 대법원 등 주요 판례가 있다면 이를 분석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 본 과제가 2년의 일반과제인 관계로 1차 년도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형사법적 침해 내용 연구를 위해 주요 쟁점별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요구사항 조사·분석을 시도함
-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 운영원리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이에 따른 관련법률 적용, 그리고 해석에 따른 학계 및 실무계(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기술적, 공학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 내지 해당 업종에서 현재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 및 기술자와의 심층 면담도 진행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

○ 메타버스의 정의

- 메타버스의 일반적 고찰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개념적 고찰을 시도함. 그동안 많은 논문과 문헌에서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있지만 통일되지 않고 각각 다른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서 유사 개념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메타버스의 통일적 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 더불어 메타버스의 특성 역시도 함께 고찰하고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와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고, 국내 입법과 해외 입법 동향을 살펴 메타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중요성을 되짚어 봄

'Metaverse' : “(meta) 초월 + (universe) 세상”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가상공간에서 인간의 뇌가 바라는 욕구를 실현”



자료: 윤정현, “메타버스 가상세계 진화와 혁신 생태계” 『국회 조명희 의원실 보고자료』, (2021), p. 2.

○ 메타버스 범죄유형 분류와 실태 조사

- 메타버스 범죄유형 분류를 위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하여 메타버스 내에서 범죄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성범죄, 명예훼손이나 모욕, 재산범죄 등을 위주로 살펴봄

〈메타버스 형사 범죄유형 분류 결과〉

범죄유형	세부 범죄유형	사례 및 행위유형
성범죄	아바타 강제추행	- '사귀자, 성교육 받아볼래' 하며 아바타에 올라탐 - 여성 아바타를 여러 남성 아바타가 집단 성추행
	아바타 유사강간	- 옷을 벗고 아바타 위에서 성행위 자세 취하도록 요구 - 옷을 벗긴 후 성행위가 연상되는 행위 지속 요구
	아바타 불법촬영 및 협박	- 옷을 벗고 성행위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녹화 - 요구를 거부하면 촬영물을 가지고 음란행위 한다는 소문을 낸다며 협박
	아바타 스토킹	- 다른 아바타가 자신의 아바타를 계속 쫓아옴 - 메타버스 접속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님
	성착취물 제작	- 특정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주면 유료 아이템이나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하여 신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 제작
	음란메시지 전송	- '몸을 보여달라'는 메시지 전송 - 공주님·왕자님 놀이를 하다 '숙녀로 보인다', '너가 말을 하면 흥분된다'는 메시지 전송 - 성적대화가 포함된 주인-노예 역할극 - 소년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성 아동에게 음란메시지와 사진을 전송
명예 훼손	아바타 명예훼손	- 여성 아바타의 메타버스 집에 'X녀'라고 낙서
	모욕, 언어폭력	- 음성채팅 기능으로 욕설이나 언어폭력
재산 범죄	사기	- 아이템을 거래하겠다고 하여 기프트 카드를 사서 보냈는데 아이템을 받지 못함 - 성인 인증 계정을 거래하겠다고 한 뒤 돈을 받았으나 계정을 양도하지 않음 - 기업의 공식 아바타와 동일한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업체와 사기계약을 체결
	절도	- 다른 아바타의 아이템을 본인 아바타의 보관장소로 넣어버림 - 악성코드를 통해 아바타가 소지한 아이템 절취
	강도	- 물리력을 행사하여 다른 아바타가 소지한 아이템을 절취

○ 메타버스의 범죄 유형과 대응방향

- 메타버스 시대 도래로 인한 새로운 범죄 형태를 살펴보고 이를 형법총론적 분석과 형사특별법적 분석, 그리고 형사정책적 분석 등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함
- 메타버스 내 명예훼손, 혐오 및 음란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정당성에 대하여 검토함
- 메타버스 내에서 독자적 인격권을 부여할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인격권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메타버스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여 살펴봄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형법의 적용을 위해 보호법익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해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례를 통해서 입법적 대응방안을 고려하였음
-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경제와 재산범죄에 관하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과의 연계선에서 기술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형사법적 논의를 도출함. 아울러 메타버스 관련 재산적 법익 침해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정책제언

-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이 과연 어느 선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임. 가령 형법상 범죄론 부분에서 아바타의 '사이버 인격권'의 인정 여부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함. 다음 현재 메타버스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형사특별법이 과연 필요한지의 여부 또한 고찰함. 가령, 성범죄 또는 스토킹, 온라인 타인 사칭, 지식 재산권 보호의 문제, 블록체인 기술관련 법적 침해 형태들을 검토함
- 메타버스에서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는 자기결정권과 자기보호권으로 나누어 검토함. 메타버스상 아바타에 대한 인격침해적 행위에 대한 형법적 보호 필요성과 관련하여, 인격권 확장 부정론, 법인격 부여론, 개별화론 그리고 독자적 사이버 인격권 필요론으로 나누고 검토함
-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입법과제의 경우,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 현실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 예외주의와 비예외주의의 대립이 있으나 현실세계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상세계에도 현실 세계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공간의 활동에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특정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음란정보의 유통과 특정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비접촉성범죄로 유형화하여 고찰함
-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입법과제의 경우,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 현실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 예외주의와 비예외주의의 대립이 있으나 현실세계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상세계에도 현실 세계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공간의 활동에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특정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음란정보의 유통과 특정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비접촉성범죄로 유형화하여 고찰함. 이에 메타버스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으로 국회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불법 정보 유통죄를 개정하는 방향과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및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함
- 인공지능이 접목된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용자와 일체화된 캐릭터가 자율적으로 메타버스 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익 침해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접속한 단계와 구별하여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사회적 방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와 제3자의 권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집중형 인공지능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고, 각 메타버스 세계마다 각각의 인공지능이 도입되더라도 폐쇄회로처럼 해당 메타버스 세계를 벗어나 다른 메타버스 세계나 현실 세계의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철저한 분리와 보안이 필요함. 따라서 기존의 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해석이나 입법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향후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 및 메타버스 개발자와 이용자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함
- 메타버스 내에서 또는 메타버스를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기여함

■ 주요 키워드

-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인격권, 가상자산, 인공지능, 블록체인

발표 2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조성현 부연구위원(pprew27@kicj.re.kr)
- 공동연구자 : 서준배 조교수, 경찰대학교 전동진 책임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전자문서 분쟁조정위원회
- 연구 지원 : 심수진 조사연구원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 배경

-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 간 의견 차이로 인한 단순한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이 필요한 불법행위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음
- 중고거래가 주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사기 피해를 제외한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요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피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 이를 토대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임

▣ 연구방법

○ 공식자료 분석

-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접수 통계, 경찰청의 사기 피해 통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고거래 관련 민원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에 인지된 중고거래 관련 이용자 피해 건수와 내용을 검토

○ 이용자 설문조사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용자 문제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2년간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총 91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
- 조사항목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특성, 거래과정과 거래방식, 거래금지물품 인지도 및 거래 경험, 분쟁 및 범죄피해 경험, 안전거래를 위한 조치로 구성

○ 전문가 심층면접 및 플랫폼 이용자 집단초점면접 조사

-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플랫폼 별 이용자 피해 실태와 플랫폼 측에서 도입하고 있는, 또는 도입 예정인 이용자 보호 운영 방침에 대해 파악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1) 분쟁 경험자, 2) 범죄피해 경험자, 3) 전문판매자를 구분하여 집단초점면접을 실시함. 이를 통해 전반적인 이용자 피해/가해 실태와 피해/가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
- 경찰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중고거래 이용자 피해실태 및 수사 단계상의 쟁점을 검토

▣ 주요 연구내용

○ 개인 간 거래 분쟁현황

-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수반하여 ‘당근마켓’ 등과 같은 어플을 통해 지금까지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았던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개인 간 거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접수 건수/구성비/증감률〉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B2C	1,138	61.7	1,080	63.3	1,042	51.4	899	17.4	1,212	22.0	34.8
C2C	649	35.2	535	31.4	906	44.7	4,177	80.9	4,200	76.4	0.6
B2B	47	2.5	90	5.3	61	3.0	76	1.5	85	1.5	11.8
기타 ¹⁾	10	0.5	-	0.0	17	0.9	11	0.2	1	0.0	△ 90.9
합계	1,844	100.0	1,705	100.0	2,026	100.0	5,163	100.0	5,498	100.0	6.5

자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내부 통계자료(2023.9.)

1) 기타: 전자거래가 아닌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등이 접수된 건

- 주요 분쟁 유형은 2022년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고, 분쟁 사례들은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실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보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등이 분쟁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음. '계약불이행'에 이어 분쟁이 많이 나타나는 '재화하자'의 주요 사례는 판매자가 상품판매를 위해 제시한 물품 판매 상태 등이 실제 상품과 다른 경우 등이 분쟁의 주요 원인임

〈주요 분쟁 유형 접수 건수/구성비〉

(단위: 건, %)

2021년				
1	2	3	4	5
재화하자 (1,655/39.6)	계약불이행 (1,213/29.0)	상품정보오기재 (387/9.3)	배송관련 (246/5.9)	계약취소/교환·반품 (246/5.9)
2022년				
계약불이행 (1,658/39.5)	재화하자 (1,454/34.6)	상품정보 오기재 (328/7.8)	배송관련 (248/5.9)	계약취소/교환·반품 (202/4.8)

자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내부 통계자료(2023.9.)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

- 민원 빅데이터에서 도출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주요 이슈 중 단순 이용자 간의 분쟁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위법성이 있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살펴봄.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주요 불법행위는 크게 1) 사기 행위, 2) 거래금지물품 유통, 3) 전문판매업자의 미신고 판매행위로 구분할 수 있음
- (사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직거래 사기 피해는 8만 3,214건으로, 2014년 45,87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함. 직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 역시 2014년 202억 원에서 2021년 3,606억 원에 이르기까지 15배 넘게 증가

〈직거래 사기 발생·검거·피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발생건수	45,877	67,861	76,228	67,589	74,044	89,797	123,168	84,107	83,214
검거건수	33,502	57,605	68,922	60,502	60,224	72,935	93,690	66,134	67,338
피해금액	20,215	20,492	30,634	17,583	27,795	83,400	89,754	360,601	-

출처: 경찰청 통계 재구성(정보통신망이용범죄)

- (거래금지물품 유통) 현재 식품, 의약품, 화장품 샘플, 해외 직구품 재판매 등 매우 다양한 품목이 정부 방침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중고거래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용자들은 이러한 거래금지 품목을 인지하지 못한채 개인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의약품에 대한 불법거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온라인 의약품 플랫폼별 적발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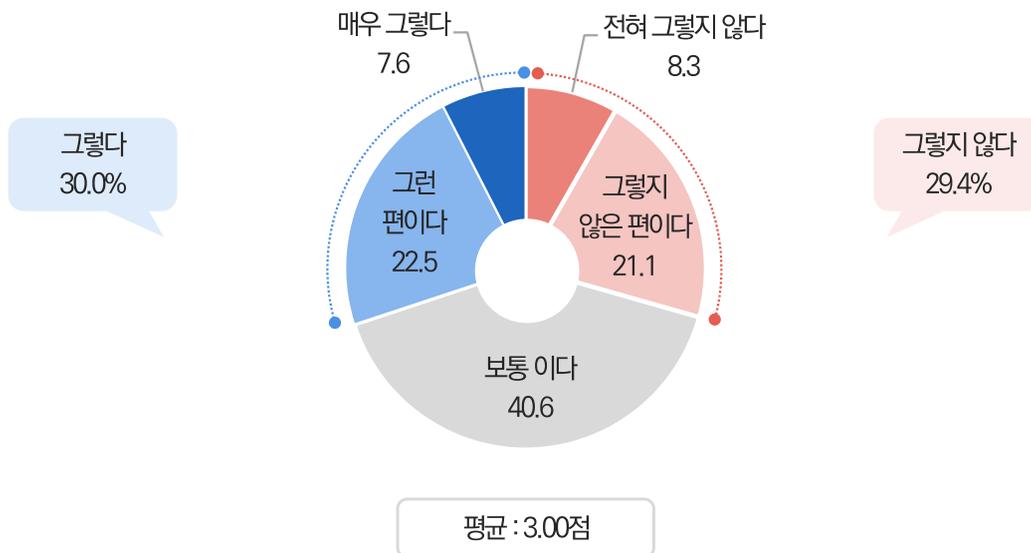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8월
총합계	28,657	37,343	28,480	25,183	14,777
일반 쇼핑몰	20,165	27,268	21,689	18,250	10,779
카페, 블로그	5,682	5,857	4,136	2,713	2,075
SNS	1,419	1,588	198	138	198
중고거래 플랫폼	-	-	-	593	136
중고나라	-	-	-	184	77
번개장터	-	-	-	119	28
당근마켓	-	-	-	228	16
헬로마켓	-	-	-	62	15

출처: 김원이 의원실 자료(2022)²⁾

- (미신고 전문판매자의 판매행위) 중고거래로 얻은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판매자가 개인간 거래로 위장하여 판매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전문판매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이 비과세 처리되고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신고 전문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개인 간 거래로 분류되어 청약 철회 등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 내 미신고 전문판매자의 물품 판매 행위 빈도〉

(n=912, 단위: %)



2) 박찬준. 김원이국회의원, 온라인 의약품 플랫폼별 적발 현황(연도별, 업체별), 월드뉴스, 2022.09.23.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4310>, 최종 검색일: 2023.11.09.)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별 분쟁 경험자와 피해 경험자의 차이

〈주요 특성별 분쟁 경험자와 피해 경험자의 차이〉

구분		분쟁 경험자	범죄피해 경험자
분쟁/피해 경험률	구매자일때	• 10.0%	• 7.5%
	판매자일때	• 8.7%	• 6.0%
평균 거래 빈도 및 평균 거래 금액 (지난 2년간)	구매자일 때	• 분쟁 경험 집단: 22회/118만 2천원 • 분쟁 미경험 집단: 9.6회/52만 7천원	• 피해 경험 집단: 22회/128만 7천원 • 피해 미경험 집단: 10.1회/54만 3천원
	판매자일 때	• 분쟁 경험 집단: 38.7회/152만 3천원 • 분쟁 미경험 집단: 15.9회/58만 2천원	• 피해 경험 집단: 18.2회/159만 8천원 • 피해 미경험 집단: 18.3회/ 61만 3천원
주요 분쟁/피해 유형	구매자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자와 연락이 어려움 •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하자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음 • 판매자가 물품 배송을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 • 사전에 설명한 물건과 다른 제품을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배송을 보내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을 발송 • 이미 사용한 공연 티켓/모바일 상품권 판매 • 중요한 하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숨김 • 사전에 설명한 물건과 전혀 다른 제품 발송 • 위조품 또는 장물 거래
	판매자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고지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측에서 상품상태에 대해 클레임 • 사용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변심으로 환불 요구 • 에스스로 거래대금을 이유없이 지연 • 물품을 못받았다고 환불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수령 후 거래대금 미지급 • 구매자가 물품을 못 받았거나 상품이 불량이라고 허위주장 • 노출된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 • 허위링크로 유도하여 개인정보 유출 • 대면거래 시 불미스러운 사건
거래금지물품 거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 경험 집단: 23.1% • 분쟁 미경험 집단: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경험 집단: 27.8% • 피해 미경험 집단: 9.0%
거래 전 안전조치	물품 구매전 판매자 이력 및 후기 확인	• 분쟁 여부와 상관없음	• 피해 경험자의 확인율이 훨씬 더 높음
	대면/비대면 거래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거래 선호:31.9% • 대면 거래 선호: 47.9% • 분쟁 미경험자에 비해 비대면 거래 선호율이 더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거래 선호:35.4% • 대면 거래 선호:36.9% • 피해 미경험자에 비해 비대면 거래 선호율 훨씬 높음
	안전결제 시스템 선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37.2% • 비선호:28.7% • 분쟁 미경험 집단보다 비선호율 훨씬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호: 41.5% • 비선호: 24.6% • 그러나 피해 미경험 집단과 차이 없음
이용자 대처	별다른 조치 없이 참고 지나감	• 전체 분쟁 경험자의 69.1%	• 전체 범죄피해 경험자의 44.6%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 주요 대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와 직접 대화 시도(82.8%), 중고거래 플랫폼측에 도움 요청(51.7%),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중재 요청 (31.0%),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요청 (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 신고(83.3%), 당사자와 직접 대화 시도(77.8%), 중고거래 플랫폼 측에 신고(58.3%),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신고(55.6%)
배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배상받지 못함(27.5%) • 일부 배상받음(35.0%) • 전부 배상받음(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배상받지 못함(60.0%) • 일부 배상받음(16.9%) • 전부 배상받음(23.1%)

■ 정책제언

○ 중고거래 중개 플랫폼 사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정책을 위한 다양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 간 거래에 신뢰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함
-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 강화를 위해 1) 개인 간 거래에서 권리 미보장 사실 고지, 2) 이용자 평가 시스템 관리 의무 강화, 3) 거래금지품목을 비롯한 비정상 거래 및 대처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 4) 전문판매자 고지의무 강화, 5) 결제대금예치제도에 대한 정확한 고지 및 이용자 편의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부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율규제를 맡기는 동시에,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1) 거래위험이 큰 물품에 대해 결제대금 예치제도 의무화, 2)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하고 확산시킬수 있는 방안 마련, 3) 사기 계좌 지급정지 기준 마련, 4) 전문판매자의 기준 정립 및 공개, 5) 해외 직구품 중고거래에 대한 상용목적 판매기준 정립, 6)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데이터 연동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 정부는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율규제를 맡기는 동시에,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분쟁 및 피해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중고거래 이용자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플랫폼 분쟁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

■ 주요 키워드

- 개인간거래(C2C), 이용자 분쟁, 중고거래 피해, 중고거래 분쟁, 플랫폼 자율규제

발표 3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경미 부연구위원(법학 박사(상법), kmlee@kicj.re.kr)
- 공동연구자 : 성유리 부연구위원(심리학 박사(법심리·심리통계))
- 연구 지원 : 홍영은 조사연구원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을 배출하기 위하여, 전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이 상당한 성장 궤도에 진입한 만큼,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광범위한 스타트업 정책이 유기적·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

○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및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 문헌자료,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지원정책 공고사항 분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기관의 정책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실태분석

○ 해외 주요국의 선진화된 스타트업 생태계 및 지원정책 조사 및 분석

- 정부 및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취합, 주요국의 중앙정부·민간 등 각 기관별 담당자 심층면담 등

○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 대상 심층면담 진행

- 스타트업 창업자를 산업, 업력, 지역, 성별 등으로 분류하여 집단심층면담(FGI) 실시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스타트업 블링크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색인(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2023)」 기준, 서울(24위) 이외 3개 도시(인천, 부산, 대전) 만이 500위권에 진입하여, 국내 스타트업은 생태계가 우수한 도시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큰 것*으로 파악됨
 ※ 서울(24위), 인천(406위), 부산(444위), 대전(498위)

〈2022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색인 기준 국가별 순위권 도시 수〉

국가	100위권	101위~500위
	도시 수	도시 수
미국	34	113
중국	8	19
인도	5	10
한국	1	3

○ 국내 스타트업 지원정책 현황

- **(정책 방향)**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2023.8.30,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예산 현황)** 2023년도 창업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합쳐 총 426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예산 규모는 총 3조 6,607억 원임
 - 이 중 중앙부처 사업의 규모(총 3조 5,078억 원)는 2023년 중앙부처 예산(총지출 기준)의 0.55%를 차지
- **(지원정책 현황)**
 - OECD 국가 기준 창업률과 창업의향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창업 후 생존율은 낮은 수준이어서 창업과 폐업의 반복으로 인하여 예산과 자원이 소실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EU와 한국의 창업 후 생존율〉

구분	창업 후	
	3년	5년
EU 평균	58.5	46.1
한국	44.3	33.8

- '2023년 창업지원사업' 안내책자 및 창업지원포털 사업공고를 기준으로,
 - 예산액 기준으로 본 사업유형별 규모는, 융자 지원사업(2조 75억 원, 54.8%), 사업화(8,167억 원, 22.3%), 기술개발(4,546.4억 원, 12.4%), 시설·공간·보육(1,568.6억 원, 4.3%) 유형 순임
 - 연령대별로 지원 가능한 사업이 존재하였으며, 안내책자 상 50대와 60대만을 위한 지원사업은 122건 중 단 2건이었으며, 30대를 위한 사업은 15건으로 매우 소수
 - 업력에 따른 지원사업의 비율도 차이를 보임.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업력이 길어질수록 지원 가능한 사업의 수가 감소
 - 융자(대출) 지원사업의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입주 시설·보육에 대한 정보 중심으로 빈번하게 공지되고 있음
 - ※ 창업지원포털 공고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융자(대출), 보증과 같은 사업정보가 직관적으로 게시되어 있지 않음

○ 주요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지원정책 현황

- **(미국)** 스타트업 선두 국가인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주축으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시애틀, 워싱턴 D.C., 샌디에고, 시카고 등 전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상위 20개 도시 중 8개 도시를 보유(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3)
 - ※ 2022년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5개사가 미국 태생의 스타트업 출신 유니콘 기업(알파벳(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페이스북))
- 스타트업 생태계의 시초인 실리콘밸리 등 민간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기술혁신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정부 개입 및 시장 중심의 발전을 정책 기조로 유지
- 1997년부터 인터넷 시장에 대한 무허가를 표방하며 시장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였고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AI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의 기반이 됨
-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주로 소수인종이나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산업별·지역별 등의 특성에 맞는 세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인하고 있음 ※ 예) 소득이 적은 지역에 설립된 스타트업에 더 많은 세제감면을 제공
- 자본시장 또한 규제보다는 시장 중심으로 발전하여 민간 벤처캐피탈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스타트업 전체 투자금액의 4.4%(건수로는 0.9%)만이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금액에 해당함
- 더불어,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담당 부처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독일)** 2022년 7월 27일, 연방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스타트업 전략(Startup strategy of the Federal Government)'을 발표하고 10개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독일 연방정부의 스타트업 전략〉

(1) 스타트업 자금조달 강화	(6)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환경 개선
(2) 스타트업 인재유치 지원	(7) 공공계약 관련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
(3) 스타트업 정신 강화 및 디지털화	(8) 스타트업의 데이터 접근성 지원
(4) 여성 창업가 및 스타트업 다양성 제고	(9) 규제 샌드박스 입법추진
(5) 연구기반 스타트업 창업 지원(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 EXIST 등)	(10) 스타트업 중점 육성

※ 10대 전략 중 하나인 '비영리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만 새롭게 추가된 전략이고, 나머지 9개 전략은 모두 다른 주무부처 등 이미 진행되고 있던 내용들임

- 담당 부처인 연방경제기후보호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WK)는 해당 전략을 발표한지 1년 만에 스타트업 전략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연간보고서를 배포하여 각 과업별 진행상황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을 시사하며 우리나라 정책 추진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
- 2017년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디지털화(Germany Digitalization)의 일환으로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De: Hub Initiative) 추진
 -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는 독일 7개 주 도시마다 특화된 산업을 주제로 12개의 허브를 설립하고 이를 관할하는 하나의 디지털 허브를 조성한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정책임
 - 디지털 허브를 통하여 스타트업, 투자자, 기존 중소기업/대기업, 전문가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함
 - de:Hub는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지원센터(허브, 클러스터) 등을 신설하는 지역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 허브를 활용하기도 함
 - 플랫폼(<https://www.de-hub.de/>)을 통해 연방과 주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연계하고 통일성 있게 제공하고 있음
- 독일 스타트업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전제가 기술기반 창업이라는 점
- **(프랑스)** 프랑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창업지원 정책(라 프렌치 테크, La French Tech)을 필두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
 - 라 프렌치 테크는 내무부 산하에 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프렌치 테크 미션(French Tech Mission)이 전담·운영하고 있음
 - 라 프렌치 테크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스타트업 자체의 특성만을 고려하는 French Tech Next 40/120, French Tech 2030 프로그램 (거주 지역, 국적 등 지원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미고려)
 - 둘째, 기획의 평등을 위한 로컬(지역) 지원 정책으로 French Tech Tremplin, French Tech Rise, French Tech Central 프로그램

- 셋째, 스타트업 운영의 전방위적 행정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 French Tech Correspondents 프로그램
-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한 스타트업 자금 지원
 - Bpifrance[※]는 2012년 12월 31일 법으로 제정된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으로 스타트업, 신생기업 등을 초기 투자·지원함
 - ※ 2012년 이전까지 중소기업 투자, 연구 산학 R&D 등을 담당하던 OSEO, CDC Enterprise, FSI의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
- 스타트업 창업을 원하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프랑스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6월부터 창업자, 취업자, 투자자에 대한 비자 트랙 'French Tech Visa'를 운영
- 민간에서는 정부지원 없이 '스테이션 F'이라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에게 장소 제공 및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업체와 엑셀러레이팅과 인큐베이팅 등 스타트업이 필요한 모든 자원이 모여 있어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 **(해외 스타트업 관계자 심층면담)** 독일과 프랑스의 스타트업 관계자 심층면담 결과,
 - 해당국들은 ▲민간 주도의 자금조달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국가는 세제혜택, 빠른 비자 발급, 지원금, 확실한 행정처리 등을 지원하여, ▲민간의 스타트업 네트워킹, 지원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윤희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스타트업 관계자들 간 개방된 정보 교류와 활발한 네트워킹, 그리고 스타트업 단계별로 존재하는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지원제도의 유무였음
-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 심층면담)**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 심층면담 결과,
 - 창업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해 풍부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예비 및 초기 단계의 탄탄한 지원, 지원금 및 사업화 자금에 대한 정책을 대체로 만족하였으며, 생태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함
 - 다만, 멘토링, 컨설팅, 교육사업에서 강사진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예산과 창업자의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는 아쉬움이 반복적으로 개선되었고,
 - 스케일업을 고려하는 3년 차 이상의 스타트업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지원금 또한 현저히 적은 점, 청년 이외 연령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부재한 점 등을 현재 지원사업의 약점으로 지적함
 - 그 밖에 심사위원의 전문성 문제,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선별하는 문제, 지자체 지원사업에서의 카르텔 문제, 과도한 행정서류 요구로 인한 어려움, 탈락에 대한 피드백 부재, 스타트업 공지 및 신청 사이트가 이용에 어렵거나 낙후된 점 등이 지적됨
 - 종합하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우수한 기술력,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은 강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인적자원과 판매 시장의 부족, 취약한 스타트업 문화, 소위 규제공화국으로 불리는 과도한 법적·행정적 규제, 민간벤처투자시장의 침체 등이 약점으로 평가됨

■ 자생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타트업 정책 개선방안

○ (민간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 민간 투자시장을 활성화하여 정책자금에 편중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 예정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미국의 BDC를 롤모델로 한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그 성장과실을 누릴 수 있는 투자기구임
-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 도입안에서의 BDC 운용주체(일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이외에 벤처시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VC(창업투자회사 등)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려하거나, 미국 사례와 같이 BDC가 대출을 통해 스타트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의 완화 등 검토할 필요

○ (조세지원 정책 개선방안)

- 첫째, 조세감면 대상을 일반창업과 기술창업을 세분화해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해 이익과 결손을 대칭적으로 취급하는 세제상 지원 필요
- 셋째, 스타트업의 클러스터 효과와 자금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 지원 고려
- 넷째, 위와 같은 선별적인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법기술적인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의 일몰기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 (복수의결권주식제도의 실효성 확보) 2023. 4.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제도 도입(2023.11.17. 시행)

- 복수의결권주식제도는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투자금 유치와 함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고, 벤처캐피탈은 기존과 같이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 있음. 다만, 이번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개정법은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바, 상장이 임박한 스타트업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투자유치 받은 기업의 창업주 지분율은 30% 미만인 경우가 상당하므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조건인 창업주 지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
※ (참고) 상법상 주요주주의 지분율(10%),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상하이거래소 상장규정 등(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에게 10% 현금흐름권을 요구)
- 개정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3년 후 자동적으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하여 신규 상장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주주 대부분이 복수의결권구조를 동의하였다는 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회사가 상장한다고 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 희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정보 공시에 따라 신규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낮은 점 등 고려 필요
- ※ (참고)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허용

○ (규제샌드박스제도 활성화) 2019년에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제도는 2023년 11월 13일 기준 누적 총 1,035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요청

- 규제샌드박스 이후 신속한 법령정비 필요
 - 현행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실증테스트를 한 이후에 특례를 통해 발견된 다양한 규제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4년이 된 현재까지 규제개선까지 이루어진 과제는 228건(22%)에 불과함
- 신속확인제도를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 정착시켜 규제가 있는 사업은 실증특례로 규제를 유예하고, 규제가 없는 사업은 임시허가하도록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
- (기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전문인력 확보) 먼저,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강사 및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두 번째는 스타트업의 인력이 될 인재, 마지막은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의 강화 필요
 - (정보접근성 강화) 모든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등록 및 공고하고, 지원사업 안내 역할과 더불어 지원 신청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사이트 구축 필요
 - (기타) 지원사업 심사기준 정비, 지역특화산업 선정의 일관성 확보 등 지자체의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 기회 확대, 지원사업 중복수혜 개선, 실패에 대한 정책적 쿠션 마련, 지원의 연속성 보장 등 개선 필요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전략 설계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자료 제공

- 중앙정부·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스타트업 정책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단기적인 성과 지향형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 지향형 정책 설계 기여

○ 자생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

- 해외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분석, 조세정책, 자금조달, 규제개선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과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은 궁극적으로 자생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자료

- 향후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지배구조 특징 및 자금조달 방안, 인적자원 확보 방안, 산업별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규제샌드박스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실증자료 기반의 연구 기대

▣ 주요 키워드

- 스타트업, 스타트업 생태계, 스타트업 정책, 자금조달, 규제개선, 벤처캐피탈(vc)

2023년 법무정책연구 성과발표회

세션 2 공존과 포용

발표 1 •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1) | 김명수

발표 2 •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 최혜선

발표 3 •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 강태경

발표 4 •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 박형민

발표 1

외국인 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I)

- 연구책임자 : 김명수 부연구위원(법학 박사, wahre75@kicj.re.kr)
- 공동연구자 : 김경찬 선임연구위원, 김태훈 부연구위원
- 연구 지원 : 최경원 인턴연구원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노동 인구 감소와 체류외국인의 수 및 미등록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 필요
 - 농촌이나 어촌, 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의 노동지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인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체류외국인이 250여만 명에 이르고 미등록외국인이 40만 명이 넘어 이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 또한 외국인·이민정책의 국내 거버넌스의 재구축, 외국노동자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이민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외국인 노동과 이민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하며 정책이나 관련 조직에 대한 재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및 비교법적 검토
 -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해서 종전 이민정책·제도 및 법체계 관련 국내외 기존 연구와 행정부처 보고서, 국책연구기관 정책연구보고서, 공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환경의 문제점을 도출함
 - 다만 이민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임을 고려해 이민정책을 오랫동안 수립·시행해 왔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이민행정 조직체계, 비자체계의 개선과 사회통합 정책 및 이민정책 관련 법 체계와의 조화로운 모색을 시도하였음

○ 외국인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 대국민·외국인 의식조사의 실시

- 문헌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외국인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외국인과 전문가 그룹(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책실무자, 연구자 등) 대상 설문조사 등 세 가지 형태의 실태조사를 병행함

▣ 주요 연구내용

■ 외국인 지원정책 현황과 협력체계

○ 외국인 지원정책과 외국인처우법상 문제점

-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합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결혼 이민자정책 등의 용어 혼용으로 정책의 혼선과 중복이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이민, 국경관리, 사회통합, 체류관리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보호주체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소관부처별 관련 법률과 그 문제점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됨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과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중으로 규율됨
- (여성가족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의 규정이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의 규정과 겹친다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충돌

- 중앙부처 간 할거주의에 따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간의 관할과 조정의 문제가 있음
-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정책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적극적인 조정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형식적 기능에 그침
- 유사한 정책위원회가 난립하고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인구정책 TF에서 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 조정도 담당하고 있어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이 요구됨

○ 우리나라 이민행정체계의 문제점

- 최고위 정책수립 시스템이 부재함. 외국인 이민정책과 관련한 법률과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각기 외국인정책, 외국인인력, 다문화가족 등의 부문별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통합성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민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함
- 전향적인 이민정책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라는 전제 요건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기관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는 노동시장의 수요분만 아니라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 통합적 이민정책(컨트롤타워) 전달체계 구축 의견

-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와 병행해 현재 각 부처별, 외국인 대상별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한 이민법 제정이 필요함
- 이민정책 전담 정부기구와 범부처 차원의 기관, 정보공유의 통합시스템이 필요함
- 대상별, 정책수단별 매트릭스화 하는 작업, 지방자치단체 내 전담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시급함
- 산업현장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비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위주의 법무부의 태도 변화가 변화하지 않는 한 법무부 주도의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정책의 수립·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해외 외국인·이민 관련 지원조직·협력체계와 이민정책의 시사점

○ 미국

- 미국 의회는 1986년에 사면법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불법체류자를 합법화시켰고, 1996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 한시적 구제 조치인 245(i)조항을 제정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국 내 거주하고 있던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취득과 나아가 시민권취득의 길을 열어줌
- 엄격한 기준 하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미 정착하여 수년간 살아가는 체류자들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함

○ 일본

- 2018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이 한 걸음 더 포괄적 사회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음
-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 민족, 민족 집단(이민자, 난민, 외국인 노동자, 지역의 소수 민족 집단 등)에 관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언어적 불평등을 없애고 국민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려는 이념인데 일본에서 '다문화 공생'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 점은 흥미로움

- 출입국 정책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하면서 외국인 관리 정책은 있어도 사회통합과 관련된 통합정책은 없음
-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범부처적으로 획책할 수 있는 이민청의 설립과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민청을 둘 수 있는 기구도 내각부가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독일

- 독일 체류 허가 관련 규정은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됨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경제권 회원국의 국민이 독일 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는 유럽연합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적용됨
- ICT 카드는 유럽연합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영자, 전문가 또는 훈련전문가가 독일 내 소재하는 기업 또는 기업집단 내 속하는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부여될 수 있음
- 이민법과 난민법이 독일 내 이민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근거임. 이민법의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체류허가법과 시행령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의 제3국적자의 체류 허가,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민자통합 공동업무단은 연방 차원에서 이민자통합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 및 개별 이민자통합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함. 이는 이민자통합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함
- 연방정부는 정부 통계 또는 설문조사의 방식을 통해 지표에 근거하여 여러 시점의 이민자통합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독일 내 이민자통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내무부가 외국인 정책 방향과 이민통합 관련 주된 업무를 하고 있음. 내무부의 관할 업무내용과 범위에서 내국인과의 교류나 통합, 외국인과 내국인의 동등성, 외국인의 국내 노동, 난민의 사회적응 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함
- 이민통합청(OFIG)은 이민과 외국인 인력 도입 절차의 실무를 다루는 외청일 뿐 정책을 아우르는 총괄 조직은 내무부 소속의 외국인 정책실(DGEF)임 프랑스의 외국인 정책실은 주요 표본이 될 수 있음

○ 영국

- 영국은 내무부(Home Office)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하고 그 아래 하위 기관이 존재함
- 내무부는 사회 내의 불법체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정부기관과 이주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의 이민자통합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NRP Network'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

- 내무부(Home Office)와 영국 전역의 지역 당국은 이민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NRPF Connect database)를 관리함으로써 증거를 기반으로 이민자들을 지원함
- 고도인재(High Potential Individual, HPI)비자, 장기근무경로(long-term work route), 고도인재(High Potential Individual, HPI)비자, 글로벌 인재 경로(Global Talent route) 설계, 크리에이티브 워커 비자(Creative Worker visa) 등 새로운 워크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의 새로운 비자제도 정비로 인하여 유럽연합 국적자들이 사실상 이민 통제의 대상이 되어 비유럽연합 시민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게 되었음

○ 스웨덴

-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이민청은 스웨덴 정부와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유엔 인권 선언을 스웨덴 이민정책의 핵심 사항으로 삼고 있음
- 스웨덴 이민청은 인권 존중을 이민정책의 중심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차별금지와 동등한 대우, 폭력과 인신 매매 금지와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며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탈리아

- 이탈리아 헌법에는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속지주의를 중심으로 함
- 정당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기도 함
- 기본적인 인권 보장 차원에서 최저한의 사회보장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음
- 이탈리아도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민에 대해 통제적인 국가로 변하게 됨
-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난민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민법은 난민수용에 대한 대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브라질

- 브라질의 이민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제정하면서 이민 관련 주요 개념들을 정비하고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과 지도원리, 이민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법률의 서두에 명시하고 있음
- 비자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민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법무공안부를 중심으로 하되 외교부, 연방경찰, 노동부가 함께 관여하고 이민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정부, 노, 사, 과학기술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이민위원회’라는 심의·의결 기구를 통해 숙의하고 결정의 신중성을 담보하고 있음

■ 정책제언

○ 이민정책 전담기관의 설치

- 이민정책 전담기관의 설치와 부처 간 유기적 체계를 구축해야 함. 그 방안으로는 ①별도의 이민부(처)를 설치하는 방안, ②법무부 산하 이민청을 설치하는 방안, ③현행안을 개선하는 방안(통합형 자문위원회), ④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⑤이민청 설치+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이민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에 따른 시급성에 비추어 이민정책 추진 체계는 독립적인 ‘이민부’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판단됨
-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치한다면 종전과 같이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고유 업무를 조율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의문임

○ 체류자격 제도와 불법체류자

- ‘제도설계상 복잡성, 체계성 결여’, ‘제도효용상 실제 수요와 체류자격 구분의 부적합성’, ‘노동력 수요 고려 미흡’ 등 체류자격 제도의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양산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합법화 방안이 필요함
- 지방이나 시골,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거나 다문화·외국인 가족이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 시설 및 생활 기반시설을 적절히 갖추도록 하고 인구이동이나 정착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 지역 주민들과 융화되어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이민정책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방송과 언론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 외국인의 지위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인구소멸지역주민)

- 외국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유입, 지역사회 정착, 장기체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비자나 행정 관련 법률체계 정비, 사회통합 정책추진 등의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음. 특히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체계 정비, 외국인 인식 개선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인구소멸지역 응답자 611명 중 81.3%인 497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현장 면접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에 관해 이미 불법체류 외국인 없이는 지역 산업이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외국인 관련 정책위원회의 통합 관련 연구결과(전문가)

- 외국인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이민청)가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 108명 중 100명인 92.6%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민청)과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는 (가칭) ‘이민정책위원회’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전문가) 현행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 체계가 이민자 또는 외국인의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함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이민정책의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정례적으로 한데 모일 수 있는 의사협의체를 통해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대상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포용적 체류자격제도 마련, 외국인의 정주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 포용적 체류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 지원과 관련해 업무 공백이나 사각지대에 대해 상호 의견 수렴과 상호협력을 통해 해당 정보의 공유와 조직체계 및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사회통합 및 이민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에 관한 정책 제언

- 농·어촌, 공장, 조선소, 건설업 분야, 가사 노동,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상 많은 노동을 제공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구제 조치나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져 산업현장의 일자리 부족 해소와 외국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의 인식 개선

- 상대방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융화되어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정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주요 키워드

- 외국인 정책, 사회통합, 미등록외국인, 이민청, 체류자격

발표 2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강석구 선임연구위원(법학박사, law39@kicj.re.kr)
- 공동연구자 : 김명우 초빙연구원, 장철준 단국대학교 교수, 홍관표 전남대학교 교수,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 오승진 단국대학교 교수,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 김현철 전남대학교 교수, 김용태 강원대학교 교수
- 연구 지원 : 최혜선 선임조사연구원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차별금지에 관한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률 제정
- 법무부의 정부안 성안을 최종 목표로 삼되, 법률안을 성안하는 데 필요한 최대한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회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를 찾는 데 집중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법제분석

- 국제법적 연구, 비교법적 연구, 기초연구, 보완연구로 구별하여 전략적 수행
- 정책실무자를 과제 심의에 참여시키는 한편, 전문가 면담 병행

○ 전문가 인식조사

- 국회의원 등 국회의 입법종사자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인 인식조사의 주요 문항 및 법 제정과 관련한 추가 문항 기반

▣ 주요 연구내용

■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표준 분석

○ UN 체제하의 차별금지에 관한 표준

- 차별의 정의 : '규약 내지 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는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 공통 제시
- 차별의 사유 :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가문,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장애, 결혼 여부, 모성, 임신 및 출산휴가,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를 사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
- 차별금지의 영역 : 협약문에 명시되어 있는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나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차별도 금지
- 구제 및 이행확보 :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구

○ 지역 체제하의 차별금지에 관한 표준

- 유럽, 미주, 아프리카 : 지역 내 설립된 국가간의 연합기구 체제 하에 인권보장체제를 수립하여 차별금지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회원국들에게 지역 인권규범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인권 보장이 가능
- 아시아·태평양 : 지역 인권보장체제 부재

■ 주요국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법 분석 [한국헌법학회]

○ 분석의 기본 방향

- 주요 국가(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의 제정법을 중심으로 제정의 경과 및 제정이유, 차별의 사유, 차별의 유형(또는 형태), 차별금지의 영역, 차별금지의 예외, 구제 및 이행확보, 국가 등의 책무 등 주요 내용 분석
- 제정 당시의 국내적 요청 또는 국제적 요청을 각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정법에 반영하였는지도 함께 제시

○ 영국의 평등법

- 영국은 2010년 기존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들을 폐지하고 평등법을 입법하여 차별금지입법을 통일화하고 평등에 대한 보호 강화
- 평등법을 통해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던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망라하여 규정

○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 독일은 1998년부터 일반적 차별금지법 내지 일반평등대우법을 입법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전개되었으나 일부 정당, 교회세력, 재계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시민당과 기민당·기사당의 연정이 성립된 2006년 기존 차별금지법안을 일부 수정한 일반평등대우법 제정
- 제정배경에는 유럽위원회의 입법 압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

○ 캐나다의 인권법

- 캐나다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캐나다 인권법 제정
- 개별 영역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던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1977년 캐나다 인권법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된 이후 1986년 형평 고용법 추가

○ 미국의 민권법

- 미국의 차별금지 법제는 1964년 민권법 제정 이래 개별 차별 사유나 영역을 중심으로 규율되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형태로의 변형 입법에 성공한 영국, 독일 등과 차이
-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한 선거권법, 임금차별과 연령차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동등임금법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재활법 및 미국 장애인법,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평주거권법 등을 통해 민권법 보완

■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의 주요 쟁점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평등 내지 차별금지 입법의 헌법적 의의

- 평등 내지 차별금지의 헌법적 의의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평등의 원칙뿐만 아니라 평등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면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
- 헌법재판소는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척도를 ‘엄격한 심사척도’와 ‘완화된 심사척도’로 구별

○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의 주요 쟁점

-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①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의 필요성, ②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의 명칭, ③ 차별금지의 사유, ④ 차별금지의 유형, ⑤ 차별금지의 영역, ⑥ 차별금지의 예외, ⑦ 구제 및 이행확보, ⑧ 국가 등의 책무 등 검토

- 입법의 필요성 : 차별금지법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 대립
- 입법의 명칭(제명) : ‘차별금지법’, ‘평등법’,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검토
- 열거할 차별금지 사유 : 성별, 임신이나 출산 및 이와 관련된 건강상태, 혼인 여부, 가족상황,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종교, 장애, 병력, 연령, 학력,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검토
- 차별금지의 유형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 괴롭힘, 성적 괴롭힘(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비방 등 혐오 표현, 중복차별, 차별의 지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검토
- 차별금지의 영역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법령이나 정책의 집행 등 검토
- 차별금지의 예외 :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차별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구제 및 이행확보 : 사법상 계약의 무효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자율적 분쟁해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고,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행정청의 시정명령,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배분, 정보공개 청구, 소송구조,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의 임시조치 및 적극적 조치 판결, 형사처벌, ⑫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검토
-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책임관 지정, 영향평가, 통계, 교육,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 지원·보호·육성 등 검토

■ 차별에 대한 국회의원실 인식조사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인식조사 개관

- 인식조사 대상 : 2023년 9월 기준 국회의원 298명 소속 국회의원실로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소속 보좌관, 비서관 등 국회의원실별 5명
- 인식조사 방법 :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전화 안내 등 가능한 조사방법을 모두 사용
- 인식조사 문항 :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별에 대한 인식, 법 제정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
- 응답 현황 : 응답자는 중복 응답하거나 동일한 국회의원실에서 5명 이상 응답한 3명을 제외한 95명이며, 응답률은 응답자수 기준 6.4%, 응답한 국회의원실 수 기준 최소 13.8%에서 최대 15.8%로 추정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 중에서 국회의원은 없으며,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관 14.7%, 비서관 85.3%이고, 소속정당별로는 여당 18.9%, 야당 76.8%, 무소속 4.2%가 응답

○ 인식조사의 시사점

- 인식조사 결과, ① 낮은 응답률, ② 국민보다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 ③ 여당보다 높은 야당의 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④ 심각한 차별 분야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인식 차이, ⑤ 여당보다 높은 야당의 차별 대응 정책에 대한 인식, ⑥ 차별 방지와 시정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상반된 평가, ⑦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차별 분야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인식 차이, ⑧ 법 제정에 반대하는 여당과 찬성하는 야당, ⑨ 명칭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 등의 시사점 도출

■ 정책제언

○ 입법전략의 방향성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법적 관점, 비교법적 관점, 입법기초자적 관점, 실태적 관점, 중립적 관점 등의 연구 성과를 인권법제의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참고하여 평등 또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제정 추진 필요
-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보장, 사회통합, 국제사회 요청에의 부응, 입법적 공백 및 적용상의 혼란 해소, 차별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 등은 물론이고,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주도권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위성 확보 가능

○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에 있어 고려사항

- 이 연구의 목표가 국회와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 모색에 있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또는 기본법 제정에 있어 입법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① 입법목적에서의 고려사항, ② 입법체계적 고려사항, ③ 입법쟁점별 고려사항 등 보완방안도 함께 제시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통한 사회 통합 강화
- 평등권의 침해와 차별의 시정을 통한 헌법적 가치의 보장

■ 주요 키워드

- 평등법, 차별금지법, 평등대우법, 인권법, 민권법

발표 3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 연구책임자 : 강태경 연구위원(법학 박사, 메일주소@kicj.re.kr)
- 공동연구자 : 최영신 선임연구위원, 김지영 선임연구위원,
석혜원 서강대학교 부교수, 최재목 영남대학교 정교수
- 연구 지원 : 이다미 조사연구원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필요성

- ‘공정(公正)’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定義)에 대한 합의가 부족
- 공정의 애매모호성은 일상적 맥락에서만 아니라 학술적 맥락에서도 마찬가지

○ 연구목적

- 공정(公正)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탐색하여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공정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
-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에 대한 잠정적 정의 제시

▣ 연구방법 - 프로토타입 분석

○ (연구1) 자유연상을 통한 ‘공정’ 연상어 수집

- 전국 성인 남녀 1,115명(남 563명, 여 552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사용할 때, 떠오르는 단어를 기재하도록 함
- 응답자가 기재한 단어(또는 어구)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해당 범주를 잘 나타내는 연상어를 정하여
전체 연상어 목록 생성

○ (연구2) ‘공정’ 표상의 차등 구조 탐색

- 전국 성인 남녀 1,072명(남 559명, 여 513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자유연상을 통해 수집한 각 연상어와 공정 개념의 관련성을 평가하도록 함
- 관련성 평정치를 기준으로 공정의 **중심적 특징**과 **주변적 특징**에 해당하는 연상어 분류
- 연상어 빈도(연구1) 순위에서 고빈도 연상어이면서 동시에 관련성(연구2)에서 중심적 특징으로 분류되는 연상어를 최종적인 중심적 특징 분류

▣ 주요 연구내용

○ ‘공정’ 개념의 중심 특징

- 고빈도 연상어(연구1)이며 동시에 중심 특징(연구2)으로 분류된 것은 **투명성, 형평, 준칙, 평등, 정의, 정직, 공평무사, 민주주의, 신뢰, 사법, 분배, 경쟁**
- 연구 1에서 저빈도 연상어로 분류되었던 준법, 법치, 객관성, 도덕, 공공성, 타당성, 합리성, 권리가 중심 특징으로 평가됨
- 연구 1에서는 고빈도 연상어로 분류되었던 차별, 정치, 부정부패, 자유, 수용성, 가치가 주변 특징으로 평가됨

〈공정성의 중심 특징 연상어 빈도 및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중심 특징		연구1	연구2	
연상어	응답 예시	연상어 빈도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투명성	투명성, 정보공개, 경영공개	54	6.89	2.03
준법	준법, 규칙준수, 반칙 없음	24	6.87	1.96
형평	형평성, 균형성	78	6.83	1.92
준칙	규칙, 법령, 원칙	174	6.81	2.37
평등	평등, 기회평등, 법 앞의 평등	915	6.78	1.88
시험	시험, 수능, 공무원 시험	72	6.76	2.01
정의	정의, 의로움, 부조리 없음	153	6.75	2.47
정직	정직, 거짓 없음, 꼼수 없음	119	6.74	1.92
법치	법치주의, 법집행, 법질서	21	6.73	2.75
공평무사	공명정대, 중립성, 비편파성	504	6.68	1.84
민주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반독재	197	6.66	1.99
객관성	객관성,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21	6.61	2.24
도덕	도덕, 윤리	23	6.57	2.00
신뢰	신뢰, 안정감	104	6.56	1.86
공공성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	49	6.55	1.89
타당성	타당성, 합당성	22	6.50	1.86
사법	법원, 재판, 형량	90	6.47	1.89
합리성	합리성, 이성적	26	6.42	1.71

중심 특징		연구1	연구2	
연상어	응답 예시	연상어 빈도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분배	소득분배,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노력에 대한 정당 보상	88	6.40	1.78
권리	권리, 당연한 권리, 동등한 권리	37	6.39	1.92
경쟁	경쟁, 동일 조건, 페어플레이	91	6.30	1.99

○ ‘공정’ 개념의 잠정적 정의

- 개인적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 관계적 차원에서 ‘준칙 적용에서의 공평무사와 정직’, 정치적 차원에서 ‘투명한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 의의

○ 공정이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단서 제공

-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실현, 관계적 차원에서 차별 없는 대우, 정치적 차원에서 공적 신뢰 구축에 기여

○ 공정과 ‘평등’, ‘공평’, ‘정의’의 상이점을 파악할 수 있음

- 기회의 평등/사법의 평등은 중심성이 높지만, 결과의 평등은 중심성이 낮음
- 공평무사한 태도가 적용되는 영역이 준칙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준칙의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전제함
-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적 신뢰의 근거인 공정은 필요조건

■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데이터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하여 ‘공정’의 일상적인 활용에 근접한 결론 도출

- 공정성 인식에 관한 설문 개발 시 반영해야 할 개념적 구성요소 확인
- 공정에 대한 인식의 문화차 연구로 확대

■ 주요 키워드

- 공정, 평등, 공평, 정직, 투명성, 민주주의, 프로토타입

발표 4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 연구책임자 : 박형민 연구위원(사회학 박사, clamovox@kicj.re.kr)
- 공동연구자 : 이선형 부연구위원, 임정재 부연구위원
- 연구 지원 : 이정민 인턴연구원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 법률적 도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동일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집단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자원이 부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부족. 이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연구 필요성

- 개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법무 수요는 시민이나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서비스의 지원을 요구할 때 발생
- 법무 수요조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경험하고, 해결하는데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사임
- 법무 수요조사를 통해 사법 체계와 사법적 문제해결에 관한 대략적인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사람들에게 사법적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수많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

○ 연구 목적

- 사법전문가나 국가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경험을 파악
-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무 지원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 생산

▣ 연구방법

○ 설문조사

- 본 조사의 목적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정 문제나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조사하는 것임. 일반인들의 문제해결 방식과 공식적 절차, 더 나아가 법적인 조력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고 실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법에 대한 인식 관련 일반 문항, 8가지 문제 유형에 대한 경험, 문제의 식별, 문제의 심각성, 도움의 출처, 문제 해결 과정, 문제의 결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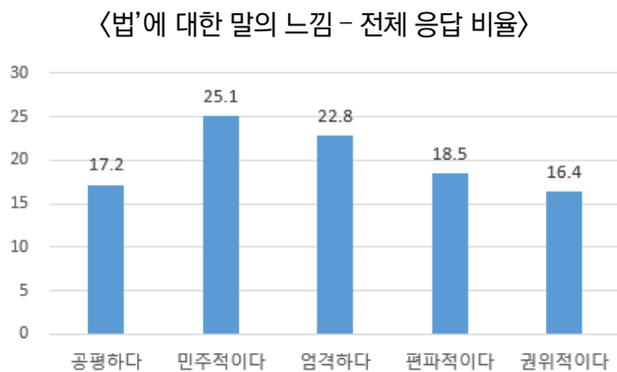
○ FGI

- 표본추출을 통해 표집되기 어려운 인구집단을 추출하여 초점집단 면접
- 총 6개 집단 시행 : 장애인집단, 저소득 고령자, 외국인 주민, 30대 이하 청년, 40대 중년, 읍면거주자

▣ 주요 연구내용

○ 법에 대한 일반 인식

- ‘법이라는 말의 느낌’은 ‘민주적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5.1%로 가장 많은 동시에 ‘편파적이다’가 18.5%로 두 번째로 많고, ‘법적으로 해결합시다’의 말의 느낌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긍정과 부정의 입장이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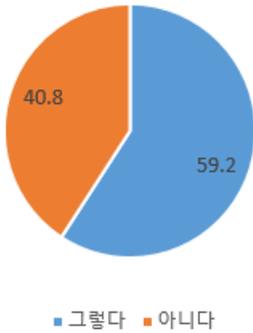


○ 법 준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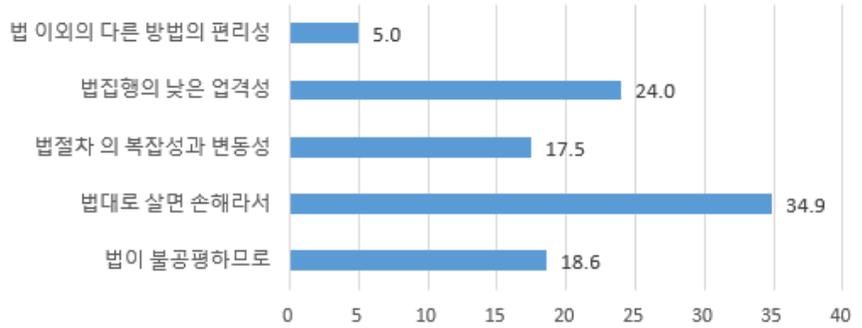
-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59.2%로 긍정적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 중 그 원인에 대하여 ‘법대로 살면 손해라서’라고 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많음

-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33.9%가 '법을 잘 알아야 한다'로 나타남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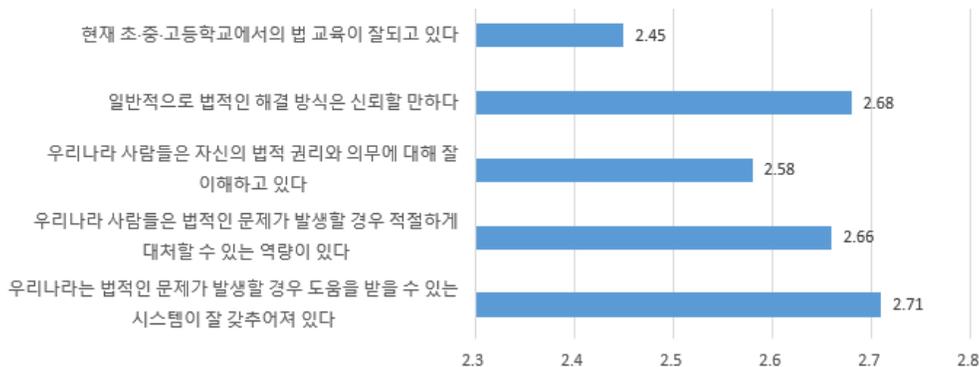
○ 정보접근성

- 전체 응답자에서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법에 대한 지식 모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임
- '60대 이상', '이혼/별거', '사별', '중학교 졸업 이하', '일용직/아르바이트',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집단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보다 'TV' 응답 비율이 더 큼

○ 법지식과 신뢰

- 사회적 수준에서 법지식과 신뢰 문항 중 법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자 평균은 2.45로 가장 작고, 법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71로 가장 큼. 법적인 해결 방식에 대한 신뢰는 2.68,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적 대처 역량에 대해서도 2.66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 개인적 수준에서의 법지식과 신뢰 문항에서는 모두 2.6 이상의 큰 평균 점수를 보임.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응답이 2.61로 가장 작고 전문가 도움에 대한 신뢰가 2.72로 가장 큼

〈사회적 수준에서 법지식과 신뢰 - 전체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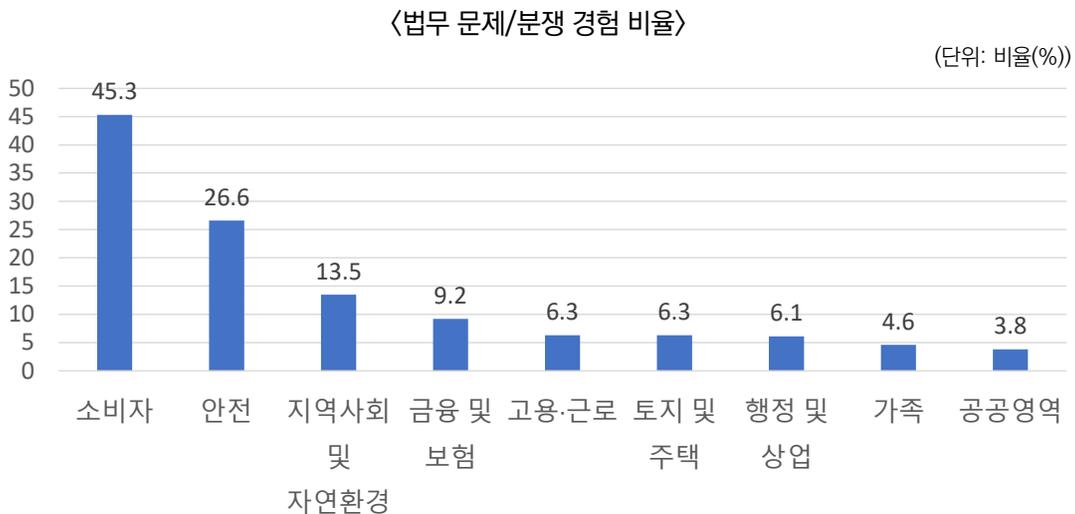


○ 법제도 경험

- 행정기관의 민원상담이나 소비자 보호단체를 통해 법 관련 상담을 받은 경험은 37.0%, 행정 또는 공공기관 의의 조정/중재/알선/협상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은 21.8%, 법적인 문제로 재판을 위해 법원에 가본 경험은 9.8%로 법원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법무문제 분포

- 법무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n=2,198) 중 ‘소비자’(45.3%) 관련 문제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안전’(26.6%),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13.5%), ‘금융 및 보험’(9.2%), ‘고용·근로’(6.3%), ‘토지 및 주택’(6.3%), ‘행정 및 상업’(6.1%), ‘가족’(4.6%), ‘공공영역’(3.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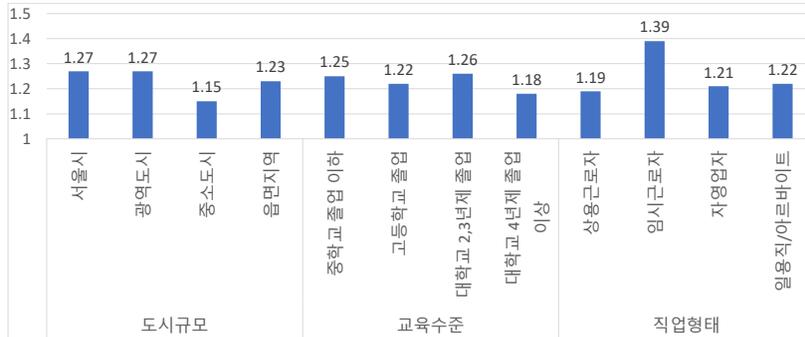
- 문제 경험 횟수의 경우, ‘소비자’ 문제가 가장 높았으며(1.38건), ‘공공영역’ 문제가 가장 낮았음(1.1건)

○ 응답자 특성별 법무 문제/분쟁 경험

- 응답자 특성별 문제경험 비율 상위 항목에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소비자, 안전,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으로 나타남. 그러나 하위항목에서는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두드러짐

- 응답자 특성별로 문제/분쟁 경험 횟수 비교 결과 도시규모, 교육수준, 직업형태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응답자 특성별 문제/분쟁 경험 횟수〉



○ 법무문제 심각성

- 응답자가 경험한 법무 문제 중 대분류 영역별로 가장 심각하였던 문제는 다음과 같음 : 고용·근로 - 임금 (36.1%), 가족 - 이혼(35.8%), 안전 - 차량사고(44.2%), 공공영역 - 건강보험(37.5%), 행정 및 상업 - 재산세(18.6%), 금융 및 보험 - 대출(15.5%), 소비자 - 교환·취소·환불·배상의 어려움(27.8%), 토지 및 주택 - 임대차계약(17.6%)
- 가장 심각하였던 문제의 심각성을 측정한 결과(10점 만점), 가정폭력(가족) 8.82점, 기타(금융 및 보험) 8.44점, 자녀 출생 및 돌봄 7.58점(가족), 부채(금융 및 보험) 7.55점, 관리(지역사회 및 자연환경) 7.51점 순으로 높았음
- 가장 심각하였던 법무문제의 발생 원인으로는 ‘나의 경험/지식/교육의 부족’(38.5%)과 ‘상대방의 부주의/실수’(37.9%)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법무문제를 가장 먼저 상의한 대상으로는 ‘가족구성원’(35.2%), ‘친구 혹은 친인척’ (25.8%)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법무 문제 해결 도움의 출처

- 법무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용한 미디어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46.8%)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정보·조언을 얻은 사람이나 조직으로는 ‘가족, 친구, 지인’(70.4%)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조언을 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33.1%)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법무 문제와 관련한 조치경험은 ‘공식적 기관을 통한 조치’가 91.4%, ‘법원에 재판 청구’ 90.0%, ‘공식적 중재 참여’ 89.6%, ‘조직·회사의 공식적 이의제기 절차 이용’ 89.2%, ‘사법기관에 신고’ 86.1% 순으로 나타남
- 문제 조치경험별 문제행동을 시작한 사람을 살펴보면, 모든 문제행동에서 ‘귀하(응답자)’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가장 먼저 경험한 문제조치 경험(1순위)으로는 ‘사법기관에 신고’(36.6%)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법무 문제의 시작 및 종결

- 문제시작에서 종료까지의 평균 기간은 문제를 포기한 경우 10.45개월, 문제가 해결된 경우 4.6개월로 나타남
- 문제 마무리 방식은 ‘귀하와 상대방 간 합의’(40.9%)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문제를 포기한 이유는 ‘심리적으로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51.0%)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법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불 경험은 ‘전화 통화 및 서신 비용’(27.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문제 해결 비용 중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 또한 ‘전화 통화 및 서신 비용’(37.6%)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법무 문제의 종결결과에 대한 인식

- 대부분의 응답자는 법무문제의 결과가 공평하였다(78.7%)고 응답함
- 공평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수준’(37.7%), ‘연령’(32.0%), ‘직업’(25.5%), ‘직급 또는 서열’(15.6%), ‘교육’(13.0%)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 대부분의 응답자는 법무 문제의 결과도출 과정이 ‘공정하였다’(82.7%)고 응답함
- 법무 문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73.9%), ‘심리적 문제’(41.3%), ‘재정적 손실’(22.4%), ‘재산피해’(15%) 등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초점집단 면접

- 장애인
 - 일상생활에서 법무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을 호소
 - 무료 서비스들에 대한 경험이 일부 있었으나 기대한 도움을 받지 못함
 - 법률자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검색하는 과정이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 법무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도움을 받을 출처를 찾기 어려움
 - 특히 시각장애인 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저소득 고령자
 - 면접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며, 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무력하게 느낌
 -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적용한다는 인식이 강함. 특히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한다고 여김

- 법적 분쟁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법에 대응할 힘이 없다고 생각
-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돈과 권력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불공정한 상황이 있다고 여김
- 이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와 절차, 그리고 전문가의 부재 등으로 인해 공평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외국인 주민
 -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법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외국인들은 한국 법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주변 지인들도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법률정보 등 용어가 어려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움
 -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도 무지한 경우가 많음
 - 출입국 단계에서부터 외국인에게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과 법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함
- 30대 이하 청년
 - 법은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면접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법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김
 - 청년들이 경험한 문제들 중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험 등이 있었음
 - 인터넷을 통해 법과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경우 검색을 통해 도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
 -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중재하거나 개입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 40대 중년
 -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보호 받지 못한다고 생각
 -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도 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격차가 컸으며, 연령, 인맥, 경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임
 -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떨 때는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

- 읍면거주자
 - 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일상적인 상황에서 법과 관련된 문제를 피하려고 함
 - 법적 분쟁은 스트레스와 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은 대화와 타협이 어려울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음
 -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었음
 -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 중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 낮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음

■ 정책제언

○ 주민의 수요에 따른 법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방안 마련

- 주민의 상황에 따른 법무문제의 경험과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존재
- 교육수준, 직업형태, 연령, 도시규모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무문제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 법무문제에 대한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여 문제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법무 취약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관 설립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경우 정보접근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
- 취약집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 설립

■ 정책 기대효과(예상 파급력)

- 법무 지원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 생산
- 법적 서비스 경험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적 영역뿐 아니라 효과적인 공공 정책(건강, 주택, 고용, 교육 등)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기여

■ 주요 키워드

- 법, 법무 문제, 분쟁, 정보접근성, 문제해결